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6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박춘선,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봉양순,
서상열, 유만희, 유정인,
이병윤, 이상욱, 이영실,
이은림, 이종태, 임춘대,
정준호, 최윤희, 황유정,
황철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코로나 이후 서울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대규모 행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이에 따른 행사폐기물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1회용품 사용 줄이기'라는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행사의 규모를 규정하고,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폐기물 감량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①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u> <u>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u> <u>2. 행사 물품 재사용·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u> <u>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u> <u>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제8조 ~ 제10조 (생략)</u>	<u>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u>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담당 부서 확인 결과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 계 분 석 관 김 지 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